

겸임교원 인사규정

제 정	1995. 6.
개 정	2002. 3.
개 정	2011. 9.
개 정	2012. 9.
개 정	2018. 10.
개 정	2019. 8.
개 정	2020. 9.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우송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에서 산업체 임·직원을 겸임교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이하 “겸임교원”이라 한다)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교원 인사행정의 공정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등) ① 이 규정에서 “겸임교원”이라 함은 고등교육법 제17조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조제2호 및 교원인사규정 제2조제4항에 근거하여 산업체 임·직원을 본 대학 겸임교원으로 임용하는 자를 말한다.(개정2019.8.21.)

② 이 규정에서 “본직기관”이라 함은 겸임교원이 정규직원으로 상시 근무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 (자격) ① 겸임교원은 고등교육법 제16조 해당자로서「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조 제4호의 규정의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산업체”【별표1】에 의한 교원의 자격기준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자로 한다.(개정2011.9.1.)

1. 대학에서의 교수내용이 본직기관의 직무내용과 유사한 자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개정 2019.8.21.)
2. 본직기관에서 정규직원으로 상시 근무하고 있는 현직 자
3. 순수 학술이론 과목이 아닌 산업체 등의 현장 실무경험을 필요로 하는 교과목을 담당할 자

② 대학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겸임교원으로 임용 계약할 수 있다.

제4조(임무) ① 겸임교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담당한다.

1. 본 대학교의 강의 또는 실험실습 지도(산업체 현장 강의 또는 현장 실험실습을 포함)(개정 2019.8.21.)
2. 본 대학교 전임교원과의 공동연구
3. 학생의 취업지도와 취업동아리 지도 및 기타 교육 및 연구 활동 지원
4. 산업체 현장 강의 또는 현장 실험실습

② 겸임교원은 주당 9시간 이하의 대학(원) 강의나 실험실습 지도를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과정 운영상 총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2시간까지 담당할 수 있다. (개정2019.8.21.)

제5조(임용절차) ① 겸임교원은 공개초빙을 원칙으로 하되, 학과(부)장의 추천에 의할 수 있다.

② 전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학과(부)장 추천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학과(부)장은 겸임교원 임용 예정학기 개시 1개월 전까지 겸임교원 활용계획서 및 추천서를 전략기획처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10.08.)(개정2020.09.10.)

③ 공개초빙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채용분야, 인원, 지원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일간신문, 정보통신망 또는 우송대학교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접수된 응모자 중에서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한

다.

④ 총장은 학과(부)장이 추천한 자 또는 공개초빙에 응모한 자에 대하여 적격여부를 심사한 후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한다.(개정2012.9.1.)

⑤ 겸임교원 응모시 또는 추천시에는 본직 기관장의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기간) ① 겸임교원의 계약기간은 1년 단위로 하되, 재계약이 가능하다.

② 계약 최대기간은 최초계약기간을 포함하여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아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11.9.1.)

제7조(직급부여) 겸임교원은 직급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겸임교수로 통칭한다.

제8조(처우) ① 겸임교원에게는 소정의 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수당의 종류, 지급범위, 지급액 및 지급방법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③ 겸임교원에게는 제4조의 활동과 관련하여 본 대학교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제9조(계약해지) ① 겸임교원이 계약기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경우 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해지할 수 있다.(개정2011.9.1. 적용2011.8.1.)

1. 본직 기관의 직을 상실한 경우
2. 본직기관장이 겸임교원 임용 계약을 해지 요청한 경우
3. 계약기간 중 최근 1년간의 강의만족도가 평균 4.0 미만인 경우
4. 학교의 명예를 손상시킬만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②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학과(부)장은 총장에게 계약해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겸임교원이 본직 기관의 직을 학기도중 상실하였을 경우에는 학사운영을 고려하여 해당 학기 종료 후 계약해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겸임교원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한다.

제10조(적용)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 대학교 교원인사규정을 준용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199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제2조 (적용일)** ① 심사 및 계약해지 관련 규정은 2011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 ② 제3조의 겸임교원 자격 요건과 관련하여 기존 겸임교원의 경우 종전의 규정을 2012년 2월 29일까지 적용하고, 2012년 3월 1일부터는 본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의 특례) 제4조제2항의 개정사항은 2019년 8월 1일 이후 계약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3. 【별표1】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산업체

1.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를 국가기관(시설 및 준경력 포함)에서 당해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직무에 전임으로 종사한 경력
2.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를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국영기업체 또는 공공단체)에서 전임으로 종사한 경력
3. 민간 산업체에서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와 관련된 직무에 전임으로 종사한 경력
4. 판사·검사로 근무한 경력
5.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감정평가사·변리사·건축사의 개업기간
6.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 따라 지정받은 지정교육기관 중 대학에서 교육을 받은 자로서 1급이상 해기사 면허 소지자의 국제항해 승선경력 및 「항공법」 제29조의3에 따라 지정받은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에서 비행교육에 종사한 경력
7. 「국가기술자격법」 및 동 시행령에 따른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해당 기술분야에서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대학 또는 대학원의 전공과목과 근무경력이 부합되고 전문대학 교원으로서 담당할 과목이 이에 연계될 수 있는 경우
8.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운영하는 병원 또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인턴 또는 레지던트로 근무한 경력
9.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포함),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 포함), 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 포함) 또는 수의과대학(수의학부 포함) 졸업자의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또는 동물병원 개업기간
10. 국가, 공공단체 또는 해당 학교장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전문의로 근무한 경력
11.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운영하는 병원 또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전임 간호사로 근무한 경력
12. 신학대학 졸업자가 목사 또는 신부로 재직하거나, 대학 불교학과 졸업자가 사찰에서 승려로 재직한 경력
13. 외국공관에서 근무한 경력
14. 공인된 상설 예·체능 및 창작·실기에 관한 단체의 주요간부 근무경력